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07 _ 2012년 6월

이 사람의 향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미재

포커스 |

특별시, 광역시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전국 현황

칼럼 | 2012년 4·20 거리 풍경

서평 | 폭력에 익숙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폭력의 기억〉



장애인 = 악당 ?!

..... 동화 <피터팬>의 작가 J. M. 배리가 후크 선장을 장애인으로 만든 까닭은, 사물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통해 그가 무도한 악당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후크의 '애꾸눈' 과 '갈고리 손' 이미지는 그의 외모뿐 아니라 인간성까지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무수한 아이들의 뇌리 속에 '후크 = 장애인 = 악당' 이란 이미지가 각인된 이상, 후크는 영화나 소설 속 판타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살아 있는 무수한 '후크들' 로 재현됩니다. 장애인들이 <피터팬>을 눈여겨 봐야하는 까닭입니다.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07 _ 2012년 6월

CONTENTS

- | | | |
|----|--------------|------------------------------------|
| 02 | 장애와 이미지 | 장애인 = 악당?! |
| 04 | 편집자 편지 |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희망합니다. |
| 05 | 이 사람의 향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미재 |
| 10 | 정책포커스 I_ 이동 | 특별시, 광역시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현황과 문제점 |
| 18 | 정책포커스 II_ 조례 |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전국 현황 |
| 31 | 장애이슈 | 장애계 소식 |
| 36 | PHOTO | 우리들의 발자취 |
| 38 | 칼럼 | 2012년 4·20 거리 풍경 |
| 41 | 서평 | 폭력에 익숙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폭력의 기억〉 |
| 44 | Cinema | 뒤로 가는 달리기, 그래도 괜찮아
-〈달팽이의 별〉 |
| 47 | 홍보 | WebWatch |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희망합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장애인 희망우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희망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증진,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구축, 장애 환경 개선, 교육 및 문화 강화 분야에서 추진될 20개 과제와 65개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일견 거창해 보였습니다.

헌데, 막상 사업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무슨 시설, 복지관, 센터들을 지어서 장애인이 몸소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복지 인프라 중심,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장 아래서 전향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게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수도 서울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지금처럼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딱 두 가지는 눈에 확 띵니다. ‘장애인지예산 도입’과 ‘18세 미만 아동 거주시설 입소 심사 강화’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센터는 여성계의 주장으로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에 버금가는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라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제 서울시 정책 당국에 전달된 것 같아 기쁩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거주시설 입소 제한 정책 역시 우리 센터가 서울시에 요구하여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탈시설 정책의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지원 정책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정책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에도 하루빨리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정작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가 크지 않은 까닭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는 날로 새로워지는데 각급 정부의 정책 대응 방식은 여전히 구시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인권친화적 정책을 외치면서 실상은 복지의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에 갇혀 있는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 희망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12년 6월 편집인 윤 삼 호

끊임없는 열정이 의정 활동의 원동력

인터뷰 · 정리 김의수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이미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해 말 우리 센터로 전화가 한통 걸려 왔다. 『모니터링 리포트』를 읽어보니 용산구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기사에서 누락되었다고 했다. 또한 『모니터링 리포트』 애독자로서 구의회에서 정책 제안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좋은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화 통화의 주인공 이미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만났다.

Q 전당대회 때문에 분주하실 텐데, 바쁜 일정임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하셨는지요?

「서울시 용산구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출산조례')였습니다.

Q 조례의 어떤 부분을 개정하셨나요?

2011년 5월 『모니터링 리포트』 기사 중에 “장애여성출산지원조례 현황과 과제”를 보니까 전국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의 지원 대상이 크게 (남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 가정’과 ‘여성 장애인’으로 나뉘더군요. 그런데 최근 제정된 우리 구의 출산조례의 지원 대상이 여성 장애인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을 보고, 그럼 “남성 장애인 가정은 어찌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자체별 지원금 지급 실적도 장애인 가정을 지원할 때가 더 많더라구요. 양육의 남녀평등이라는 취지에 맞게 남편이 장애인이든 아내가 장애인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도록 이번에 용산구 출산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Q 지급대상 확대가 주요 개정 대상이었군요. 그럼, 그에 따른 추가 조치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우선 조례명부터 바꿨었는데요, 기존의 「용산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에 관한조례」를 「용산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에 관한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집행부와 협의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예산을 2012년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6명이 3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Q 그렇군요. 당연히 대상이 변경되었으니 조례명도 그에 부합해야 하겠죠. 또 다른 개정 사항은 없나요?

지원대상 확대 말고도 중요한 개정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출산조례와 별도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출산조례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추가로 장애인 출산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 신규대비표 참조).

Q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조목조목 개정해 주시고, 무엇보다 전국에 배포되는 우리 소식지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는 의원님의 적극성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의정 활동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노하우가 있다면, 이 소식지를 읽는 지방의원과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산구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신구대비표(일부)

(개정안 공포 : 2011.09.22.)

기존	개정안
<p>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p> <p>제4조(기준 및 지급액) ①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장애등급 1~2급 : 1,000,000원 2. 장애등급 3~4급 : 700,000원 3. 장애등급 5~6급 : 500,000원</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하지 아니한다.</p>	<p>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p> <p>제4조(기준 및 지급액) ①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장애등급 1~2급 : 1,000,000원 2. 장애등급 3~4급 : 700,000원 3. 장애등급 5~6급 : 500,000원</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p>

저는 5대 구의원을 하면서 “만약 6대에도 구의원을 하게 되면 이것만은 꼭 실천하자”고 다짐했던 게 “매일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잘 실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만난 건 아니고요, 아침운동이나 친목회 활동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경로당, 시장 등에서 지역 주민들을 근거리에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꼭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구의원들로 구성된 정책 스터디에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공부합니다. 『모니터링 리포트』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매일 챙겨 보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정책이 무엇이 있나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출산지원조례 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조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서울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휠체어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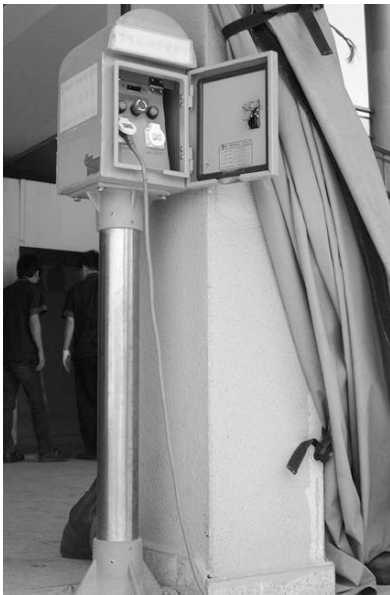
Q 그럼,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된 겁니까?

휠체어조례는 2011년 4월 15일에 제정되었어요. 지난 해 현장 의정 활동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횡단보도에서 어느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아찔하던지... '전동휠체어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사건이 휠체어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용산구 휠체어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이 조례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수리센터와 야외 충전기를 설치하고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조례처럼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Q 야외 충전기라 하셨는데요, 충전기를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 설치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 한강공원 이촌센터 옥외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충전기. 좌측면에는 안내 번호(이촌센터, 충전소설비업체)가 기재돼 있다. 기둥을 부착해 전체 길이를 높였는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충전기를 설치하는 까닭은 방전이 되어 전동휠체어가 갑작스럽게 멈춰 서는 것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는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접근 시간 또한 가급적 최대한 짧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any time, any where를 실천하지는 겁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복지관이나 휠체어 수리센터 같은 특정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 그런 기관의 업무 시간이 종료된 뒤에는 충전기도 덩달아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전기는 야외에 설치되어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면 장애인 관련 기관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좋을 듯 보이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게

더 유용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사안 하나도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장애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Q 듣고 보니 세상 일이 단순한 게 없는 듯합니다.(웃음) 앞으로 용산구 야외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나갈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용산구의 야외 충전기 보급은 지금이 시작 단계입니다. 올해 안으로 왕래가 잦은 야외 공간 2곳에 추가로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령, 지하철역사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겠지요. 단, 조사 과정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를 참여케 해서 장소 선정에 조율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Q 장애인 출산조례와 전동휠체어조례는 우리 센터가 선정한 7대 우수 장애인조례인데요. 의원님은 엑기스만 골라 제정하신 셈입니다(웃음). 그런데 장애인 복지정책은 그 분야가 다양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복지정책에 비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부족한 편인데요, 이왕 이렇게 좋은 조례들을 만드셨으니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현황과 문제점

이병원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특별시 및 광역시 7개 도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부산시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다음해에, 그리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순으로 조례가 제정됐다. 이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상버스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조례에는 저상버스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표1 참조)

〈표1〉 특별시·광역시의 교통약자 관련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주요내용	제정일	최근 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 저상버스의 운영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007.05.29	2012.01.0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006.05.10	2011.06.0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저상버스의 운영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007.10.30	2008.08.05

지역	조례명	주요내용	제정일	최근 개정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저상버스의 운영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008.06.23	2009.10.0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008.12.26	개정 없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저상버스의 운영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008.05.08	2012.01.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저상버스의 운영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008.08.01	2011.07.27

저상버스의 현황과 문제점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1/2을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특별시, 광역시, 기초지자체에 5년 주기로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안에는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시와 광역시 중 단 한 곳도 도입률이 1/2을 넘어간 곳은 없으며, 가장 도입률이 높은 서울특별시도 2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6개 광역시는 10%의 도입률조차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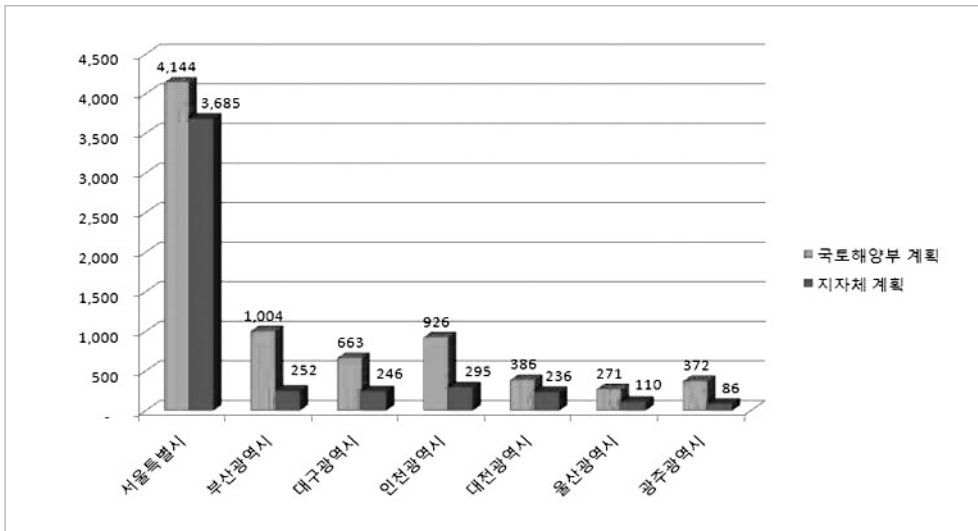
〈표2〉 특별시·광역시의 저상버스 도입대수(2011년 12월 31일 기준)와 5개년 도입계획¹⁾

시도명	시내버스 총 대수	저상버스 도입대수	저상버스 도입 계획(누적대수)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특별시	7,534	1,757	1,967	2,540	3,113	3,685	3,685이상
부산광역시	2,511	182	252	계획 수립중			
대구광역시	1,658	146	166	186	206	226	246
인천광역시	2,316	158	240	295	계획 없음		
대전광역시	965	111	136	161	186	211	236
울산광역시	677	60	70	80	90	100	110
광주광역시	930	72	86	80	계획 없음		

* 이 표는 2012년 4월 각 지자체별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저상버스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인 13,493대까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보급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도입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도 201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전체 버스의 31.5%로 계획했으나 실제 도입률은 12%에 불과해 목표치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다. 모니터링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 보급계획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서울특별시 55%, 6대 광역시는 40%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본 모니터링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들 지자체에서 받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표2 참조)

〈그래프1〉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의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계획 비교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까지 3,685대를 도입하고 그 다음해에는 그 이상을 도입하겠다고 했

1) 이 표에 나온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수집한 자료로 국토해양부의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2011년 말 기준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시내버스 총대수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저상버스 총대수	1,667	182	148	184	72	111	60
보급률	22.1	7.2	8.9	8.0	7.7	11.5	9.0

을 뿐 구체적인 수치계획을 잡지는 않았다. 국토해양부의 목표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2016년까지 4,144대를 도입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2016년까지 1,004대를 도입해야 하나 실제 도입계획은 2012년에 70대이며 이때 누적도입대수는 252대에 불과하다. 이후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 대구광역시는 2016년까지 663대를 도입해야 하나 실제 그 해까지의 대구광역시의 도입계획은 246대에 불과하다. 인천광역시도 2016년까지 926대를 도입해야 하지만 2013년까지 295대만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의 도입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역시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르면 각각 386대, 271대, 372대를 도입해야 하지만 실제 해당 지자체의 도입계획은 각각 236대, 110대, 86대에 그쳤다.(그래프1 참조)

이처럼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 번째로 지자체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재정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운송업체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약 1억 원의 도입비용을 보조해주어야 한다. 이 같은 도입비용의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²⁾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적자상황이 매우 심각한 인천광역시는 2016년까지 92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여간한 부담이 아닐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진정으로 이들 지자체의 저상버스를 목표 도입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보조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교통약자법이 가진 한계점이다. 교통약자법은 저상버스의 도입책임을 특별시, 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으나 저상버스를 실제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운송업체이다. 하지만 운송업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한 운영비를 감안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잦은 시설고장에 따른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단지 도입비용을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운송업체들의 저상버스 도입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난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목표미달을 통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2차 계획 어디에서도 운송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유인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저상버스는 도입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느냐이다. 물론 저상버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는 아니다. 교통약자법상에서

2) 국토해양부는 5개년 간 저상버스 사업비로 국비 4,565억원, 지방비 5,038억원을 책정했다.

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이들 모두를 위한 버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중 장애인의 입장은 다른 교통약자의 입장과는 다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는 저상버스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매우 낮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하다.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본격적인 저상버스 탑승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조사로 지난 5월 3일, 4일, 7일 총 3일 동안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과 함께 총 9번의 저상버스를 이용해 보았다.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한 높이의 턱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버스가 정차되어야 한다. 이후 버스기사는 경사로를 내리고 장애인의 안전한 탑승을 돕기 위하여 기사가 직접 휠체어를 잡아주어야 한다. 또한 버스 특성상 운행 중 심하게 흔들리는 차체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정시설에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이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탑승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일단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서 저상버스를 타기는 매우 어렵다. 버스가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보조원이 버스기사에게 휠체어 탑승사실을 알려줘 버스 정차지를 재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만일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혼자서 탑승하기 위해서는 인도 턱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저상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또한 9번의 조사 중 단 한 번도 버스 탑승 시 기사가 나와 휠체어를 잡아준 사례는 없었다. 휠체어 고정여부의 경우 바퀴 고정시설이 저상버스 내에 장착되어 있지만 전동휠체어 바퀴는 저상버스 바퀴고정시설 규격에 맞지 않아 고정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안전한 상태로 고정시킨 채 버스가 출발한 사례는 9번 중 단 한 번에 그쳤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유일한 버스인 저상버스는 이렇게 장애인이 타기에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나름대로의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특별교통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교통약자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 또한 이 법에 따르면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따라주어야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가령 일부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산정할 때 휠체어탑승설비가 없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과 임차택시, 복지관운영차량 등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교통약자법상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량들이다. 모니터링센터에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국토해양부의 전국 특별교통수단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 수치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3〉 특별시·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2011년 12월 31일 기준)

시도명	국토해양부 기준 (2010년) ³⁾	각 지자체 자료(2011년)							특별교통수단 합계 (A-B)
		장애인 콜택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임차택시	무료 셔틀버스	그 외	합계 (A)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 차량수(B)	
서울특별시	300	300	140	0	23	0	463	140	323
부산광역시	100	100	0	0	3	0	103	-	103
대구광역시	60	70	0	30	0	0	100	30	70
인천광역시	104	122	0	0	0	0	100	-	122
대전광역시	60	30	8	55	0	0	93	63	30
울산광역시	20	24	10	37	2	2 ⁴⁾	75	49	26
광주광역시	30	45	6	0	0	0	51	6	45

모니터링센터에서 위의 7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대부분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자료의 경우 2010년 말 기준이며 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국토해양부 기준 자료에는 2011년도에 위의 지자체에서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은 산정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위의 자료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인데 대전은 2011년 말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93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63대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교통약자법상에서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국토해양

3)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기준의 특별교통수단 현황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2011년 9월 30일 기준 도입대수는 전국적으로 1,478대이다.

4) 이 차량은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신장장애인병원이송차량이다.

부의 2010년 기준으로도 대전광역시 6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이 중 최소 30대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기에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광역도의 기초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토해양부는 전국에 있는 특별교통수단현황을 교통약자법상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정의한 대로 다시 파악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산정한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를 10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가 밝힌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은 국토해양부와 차이를 보인다.(표4 참조)

〈표4〉 특별시·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⁵⁾

시도명	법정대수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누적대수)					2016년까지 도입률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특별시	409	400	500	600	600	600	140%
부산광역시	205	100	100	100	100	100	49%
대구광역시	141	80	90	100	110	120	85%
인천광역시	145	122	122	122	122	122	84%
대전광역시	84	35	40	40	40	40	48%
울산광역시	53	30	47	54	54	54	102%
광주광역시	78	55	65	75	80	80	103%

서울특별시는 2016년까지 600대를 도입하여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을 14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역시 2016년까지 도입률을 법정대수까지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국토해양부의 목표치에 미달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현 계획대로라면 5년 내 50%의 도입률도 달성하지 못한다.

현행 교통약자법 제6조 제4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3월 29일

5) 이 표에서 제시된 법정대수는 2010년도의 1·2급 장애인 수에 의해 산정된 것이다. 2016년까지 도입률을 제시할 때 향후 1·2급 장애인 수의 증감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2016년도까지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이 없다고 답한 해는 그 이전해까지의 계획을 토대로 작성했다.

신설, 6월 30일 시행) 이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휠체어탑승 장애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광주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규정상 이용자격에 의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1, 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는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65세 이상 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거주자는 1, 2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운행지역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등 인천 인접도시까지 운행 가능하다. 하지만 타 지역 거주자에게는 인천광역시 관내로 운행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광주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1·2급장애인 및 3급지적, 자폐, 발달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에게 이용자격을 주고 있으나 타 지역 거주자는 1급 휠체어 이용자만이 탑승 가능하다.(표5 참조) 이 두 지자체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5〉 특별시·광역시에서의 장애인콜택시 타지역 거주자 이용 가능 여부

시도명	타지역 거주자 이용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대구광역시	대구시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인천광역시	1, 2급 장애인 인천광역시 관내 이용가능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광주광역시	1급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가능

지금까지 특별시·광역시 7개 도시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토해양부의 제2차 이동편의증진계획과 함께 살펴보았다. 앞으로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이들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책임이 있는 150여개의 시·군 까지 두루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재정 및 행정여건이 다른 시·군보다 낫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더욱 많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전국 현황

김의수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1. 전국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제정 및 시책 추진현황

전국 장애인 여성/가정 출산지원 조례(이하 '여성 조례', '가정 조례')는 3월말 기준으로 총 57개(제정율 23%에 불과)가 제정되었다. 전국 최초 제정은 충남 천안시(2006.12.26), 가장 최근에 제정된 지역은 전북 익산(2012.01.12)시로 대략 5년 동안 한 달에 1개씩 제정된 셈이다.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11년~12년 사이에 제정된 조례는 17개로, 2011년에 14개, 2012년에 3개가 제정되었다. 제정율 최고 지역은 총 16개를 제정한 경기도(제정율 50%)며 대구시는 제정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지원 대상별로 구분하면 장애인여성이 30개(56%), 장애인가정이 27개(44%)로 여성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조례의 최초 제정은 여성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정 시 '가정'으로 제정되고 있다. 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의 제안을 수용하여 '여성'에서 '가정'으로 조례명과 지급 대상을 개정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다¹⁾

1)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2011.04.19 출범)는 장애인 출산지원조례 지급 대상을 여성에서 가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왔다. 또 작년부터 지방순회 토론회 개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7대 장애인 조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조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장애인 출산지원조례 전국 제정현황(2012. 04. 01 현재)

제정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체수	26	17	9	11	6	6	6	32	19	13	17	15	23	24	19	1	244
제정수	6	4	-	2	1	2	1	16	1	4	5	7	4	2	2	-	57
대상	여성	3	-	-	1	-	-	6	-	4	5	5	3	2	1	-	30
	가정	3	4	-	1	1	2	10	1	-	-	2	1	-	1	-	27
제정율	23	24	-	18	17	33	17	50	5	31	29	47	17	9	11	-	23

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과 다른 법령에 의한 중복·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부가 지원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들 역시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개정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쌍생아 가산 지원은 13건, 타법령에 의한 추가 지원은 20건이 있다. 이중 쌍생아 지원과 타법령을 모두 허용하는 조례는 전북 무주군이 유일하다. 또 타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때 차액만 지급하는 조항을 명시한 곳도 10건이나 되는데 추가 지원 허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출산지원 조례의 쌍생아 가산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추가지원 현황

(2012. 04.01 현재)

	쌍생아 가산지원		다른 법령에 의한 추가지원		다른 법령에 의한 추가 지원 불가 (차액 지급)	
서울	동대문구	1	용산구, 중구, 종로구	3	서대문구	1
부산	*기장군 ²⁾ , 북구, 사하구	3		-	사상구, 북구,	1
대구		-		-		-
인천		-	남구	1		-
광주		-	서구	1		-
대전		-	중구	1		-
울산	울주군	1		-		-
경기	과천, 안산, 안양	3	파주, 하남	2	고양, 성남,	2
강원		-	화천군	1		-
충북	단양	1	단양 ³⁾	1	증평	1
충남		-	서산, 아산 ⁴⁾ , 예산, 천안	4		-
전북	무주, 익산	2	무주	1	군산, 김제, 익산, 전주	4
전남	영광	1	순천, 목포, 여수	3		-
경북		-	영주시	1		-
경남	고성	1	고성 ⁵⁾	1	창원	1
		13		20		10

아울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책을 추진 중인 광역시도는 울산, 강원, 경남 3곳이고 시군구 비로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경기(1) 충남(3) 전북(1) 총 5건에 불과해 관련 시책 추진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 강원도는 광역시도와 전체 기초지자체 18곳 중 17곳이 추진 중인데 화천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19개 전지자체 모두 장애인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19개 지자체 중 16개 단체가 시행 중이며 조례 제정도 2건으로 도에서 1개 지자체만 빼고 출산정책을 모두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시책도 조례 제정도 전혀 없다.

장애인 출산지원 시책 전국 추진현황(2012. 04. 01 현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시책 추진 지자체	×	×	×	×	×	×	○	×	○	×	×	×	×	×	○	○	4

2. 2011 전국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지원금 지급 실적 현황

(1)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가 여성 장애인 지원 조례보다 지급 인원/총액이 월등히 많다

정보 공개 청구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악된 43개 지자체들의 전년도 지급실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지급 총원은 619명이고 지급 총액은 4억 9,80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여성 장애인(중증+경증) 349명이 3억 320만 원(60%), 남성 장애인(중증+경증) 270명이 1억 9,487만 원(40%)을 지급받았다. 가정 조례는 여성 장애인만 지급 할 수 있는 여성 조례와 달리 남성 장애인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총 지급 액수의 40%는 모두 가정 조례 제정에 의한 지급 실적이다. 따라서 여성 조례를 가정 조례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향후 남성 장애인 지급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2011년도 전국 43개 지자체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지원금 지급 실적 현황 (단위 : 천 원)

지급 총원 / 지급 총액			
619 / 498,070			
여성	349(56%) / 303,200(60%)	남성	270(44%) / 194,870(40%)

2) 부산 기장군은 100/100을 지급하고 있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원 허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원 허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원 허용

지역별 지급 실적을 보더라도 여성 조례를 제정한 지역보다 가정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훨씬 지급 실적이 높다. 가령 여성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서대문구는 2명을 지급한 데 비해 가정 조례를 제정한 경기 안양과 안산은 각각 114명, 104명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인다. 43개 단체 지급대상 평균은 14명 내외로 매우 적은 수치다(〈부록1〉 참조).

그리고 지원 대상 구분에 따른 지급 편차도 상당하다. 전국 24개 여성 조례의 지급 총원은 여성 189명 지급 총액은 1억 8,220만 원, 19개 가정 조례의 지급 총원 및 총액은 여성 160명, 1억 2,100만 원, 남성 270명, 1억 9,487만 원이다. 이 통계를 보면 여성 조례의 지급 인원은 총인원의 30%, 가정 조례는 70%로 가정 조례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급액에서도 여성 조례는 총지급액의 37%, 가정 조례는 63%로 가정 조례가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2011년도 지급 대상 구분에 따른 지급 실적 현황

(단위 : 천 원)

	지급대상				총계
	여성 조례	가정 조례			
조례수(개)	24	19			43
성별	여성	여성	남성	소계	
지급 인원(명)	189(30%)	160(26%)	270(44%)	430(70%)	619
지급액	182,200(37%)	121,000(24%)	194,870(39%)	315,870(63%)	498,070

(2) 지원 대상 확대 추세 - 여성에서 가정으로

2012년 3월 현재 전국에 제정된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는 총 57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여성 조례는 30건(53%), 가정 조례는 27건(47%)이다. 기존의 여성 조례를 가정 조례로 개정된 사례는 총 5건이 확인되었는데, 2011년도에 ‘광주 서구’와 ‘경기 과주’가 2012년도에는 ‘경기 수원’, ‘서울 용산구’, ‘서울 중구’가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35개의 여성 조례는 30개로 감소했다. 작년부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가 가정 조례로 전환을 제언해온 바 지역에서 조금씩 그 결실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30건의 조례를 모두 가정으로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신규 제정되는 조례는 반드시 가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 부록.1 > 2011년도 전국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지원금 지급실적 현황

(단위 : 천 원)

	지역	지급 대상	지급 총원	지급 총액	중증남성		중증여성		경증남성		경증여성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1	서울	관악구	여성	15	16,000			5	6,000			10	10,000
2		동대문구	여성	5	4,300			1	1,500			4	2,800
3		서대문구	여성	2	1,200			2	1,200				
4		용산구	가정	8	5,800			2	2,000			6	3,800
5		종구	여성	4	3,100			1	1,000			3	2,100
6	부산	사상구	가정	16	7,500	3	2,800			12	4,400	1	300
7	인천	남구	여성	7	13,500			5	12,000			2	1,500
8		부평구	가정	36	23,800	8	4,250	10	9,500	6	1,650	12	8,400
9	광주	서구	가정	3	1,500							3	1,500
10	울산	울주군	가정	51	37,500	2	2,000	3	3,000	38	27,500	8	5,000
11	대전	동구	가정	해당 사항 없음									
12		중구	가정	3	1,600	1	1,000			1	300	1	300
13	경기	고양	가정	해당 사항 없음									
14		과천	가정	해당 사항 없음									
15		광명	여성	8	5,600			4	3,400			4	2,200
16		김포	여성	1	1,000							1	1,000
17		남양주	여성	14	15,500			3	4,500			11	11,000
18		성남	여성	11	9,900			2	2,000			9	7,900
19		수원	가정	26	15,600			13	9,100			13	7,900
20		안산	가정	114	87,570	17	21,420	6	5,800	72	47,850	19	12,500
21		안성	가정	해당 사항 없음									
22		안양	가정	104	77,900	2	2,000	2	2,000	78	58,700	22	17,200
23	오산	가정	9	3,400	1	350	3	1,500	1	150	4	1,400	
24	의왕	가정	5	2,600	3	900	2	1,700					
25	의정부	여성	9	8,500			3	2,500			6	6,000	
26	파주시	가정	8	9,200			2	2,200	3	3,600	3	3,400	
27	화성	여성	13	12,500			3	3,000			10	9,500	
28	충북	보은군	여성	1	1,000							1	1,000
29		증평군	여성	1	500			1	500				
30		청주시	여성	27	25,600			5	7,500			22	18,100
31	충남	본청	여성	해당 사항 없음									
32		천안	여성	20	23,500			7	9,500			13	14,000
33		예산군	여성	1	500							1	500

34		군산시	가정	18	13,600	3	1,900	1	1500	4	2,800	10	7,400
35		김제시	가정	5	5,400			2	3,000	2	1,400	1	1,000
36	전북	완주군	여성	2	1,400							2	1,400
37		임실군	여성	4	2,000							4	2,000
38		전주시	여성	10	8,600			2	2,000			8	6,600
39	전남	순천시	여성	15	10,000			3	3,000			12	7,000
40		목포시	여성	해당 사항 없음									
41	경북	구미시	여성	13	11,900			2	3,000			11	8,900
42		영주시	여성	6	6,100			2	3,000			4	3,100
43	경남	창원시	가정	24	22,900	12	10,900	11	11,000	1	1,000		
계		여성(24)/가정(19)		619	498,070	52	47,520	108	117,900	218	147,350	241	185,300

〈부록. 2〉 전국 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 제정 현황(2012. 04. 01 기준 총 57개)

	조례명(제정일)	지원대상자	지원액
서울	관악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6.8)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00만원(1급, 2급의 경우 120만원)
	동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09.4.30)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2급 150만원 ↓, 3~4급 100만원 ↓, 5~6급 70만원 ↓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09.4.7)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2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 *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
	용산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제한조례(09.5.8)(11.9.22 여성에서 가정으로 개정됨)	장애인가정 (출산전 3개월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 * 「용산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 가능(불가에서 가능으로 개정됨)
	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08.11.25)(2012.05.07. 개정 지원대상 여성→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전 6개월 ↑ 거주)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신설 2012.05.07) 가.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다.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신설 2012.05.07) 가.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 「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 가능.
	종로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2011.10.28 제정)	장애인가정 (출산전 10개월 ↑ 거주)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가능.
부산	사상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제한조례(11.05.04)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1~3급 100만원 ↓, 4~6급 50만원 ↓ *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차액을지급

<부록. 2> 전국 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 제정 현황(2012. 04. 01 기준 총 57개)

	조례명(제정일)	지원대상자	지원액
부산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11.09.19 제정)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80만원, 5~6급 6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가능.
	북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2011.08.03 제정)	장애인가정1~4급 (출산전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가능.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은 그 차액을 지급함.
	사하구장애인가정출산 및 영아양육지원조례 (2011.12.29 제정)	* 장애인가정1~4급(출산전1년 ↑ 거주) *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 지원금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 같은 경우 : 제1호의 지원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 다른 경우 : 부모 중 제1호의 지급금액이 많은 금액에 적은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 쌍생아 이상은 신생아 1명마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 양육지원금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이내지급.
인천	남구여성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09.11.23)	여성장애인 (출산전 180일 ↑ 거주)	1~2급 300만원 ↓, 3~4급 200만원 ↓, 5급 100만원 ↓, 6급 50만원 ↓ * 「남구신생아출산장려금및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 가능
	부평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07.10.05)(10.10.08, 일부개정 내용동일)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 '모'가 장애인일 때:1~3급 100만원, 4~5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일 때:1~2급 70만원,3~4급 3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는 둘 중 지급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광주	서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10.3.17) (2011.12.30,여성에서 장애인가정으로 개정됨)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	- '모'가 장애인일 때: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부'가 장애인일 때 : 1~2급 70만원, 3~4급 5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에는 둘 중 지급액이 많은 금액으로지급 * 「서구출산장려지원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 가능
대전	동구저소득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10.05.11)	장애인가정(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전 180일 ↑ 거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장애인 가정은 제외
	중구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지급조례(11.05.27)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30만원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허
울산	울주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09.2.26)	장애인가정 (출산전 90일 ↑ 거주)	1~2급 100만원 ↓, 3~4급 80만원 ↓, 5~6급 60만원 ↓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둘 중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 가산

조례명(제정일)	지원대상자	지원액
고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조례(11.06.17)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100만원 ↓, *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
과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조례(10.2.12)	장애인가정 (출산전 180일 ↑ 거주)	1~3급 100만원 ↓, 4급~6급 70만원 ↓, 건강검진비용 30만원 ↓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광명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7.8.13)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00만원 ↓
김포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7.6.27)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00만원 ↓
남양주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 금지급조례(08.3.27)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2급 150만원, 기타 100만원
성남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3.14)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00만원 ↓ *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수원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07.12.27)(2012.01.06. 조례명, 지원대상 개정)	장애인가정 (출산전 6개월 ↑ 거주)	장애1~3급 100만원 ↓ 4~6급 70만원
안산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조례(08.12.3) (2011.05.21일부개정, 국가유공 자가정도 지급)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1~3급 100만원 ↓, 4~6급 70만원 ↓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 70만원이내
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08.5.1)	장애인가정(출산전 6개 월 ↑ 거주,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이 높은 부모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150만원, 기타100만원
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조례(09.8.11)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1~3급 100만원 ↓, 4~6급 70만원 ↓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오산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4.11)	장애인가정 (출산전 6개월 ↑ 거주)	- '모'가 장애인일 때 1~3급 100만원 ↓, 4~5급 70만원 ↓ - '부'가 장애인일 때 1~2급 70만원 ↓, 3~4급 30만원 ↓ * 중복지급불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
의왕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조례(08.2.28)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 '모'가 장애인일 때 1~3급 100만원 ↓ 4~5급 70만원 ↓ - '부'가 장애인일 때 1~2급 70만원 ↓ 3~4급 30만원 ↓ *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는 둘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경
기

〈부록. 2〉 전국 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 제정 현황(2012. 04. 01 기준 총 57개)

	조례명(제정일)	지원대상자	지원액
경 기	의정부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5.2)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00만원 * 신생아가 1인 이상일 때 100분의 50 지급
	파주시가정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7.6.1)(11.06.17 '가정'으로 개정)	장애인가정	120만원 ↓ (개정에 따른 20만 원 상향)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하남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조례(2010.11.17)	등록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3급 100만원 ↓, 4~6급 70만원 ↓ *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 가능
	화성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8.1)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00만원
강 원	화천군장애인가정출산 및 영아양육지원조례(2011.04.29)	등록장애인 · 장애인 차상위계층(출산전 1년 ↑ 거주)	모가 장애인일 때 100만원 부가 장애인일 때 50만원 * 양육지원금(부,모 동일 적용) 가.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나. 12개월~24개월: 월 15만원 다. 24개월~36개월: 월 1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셋째아 이상 지원 출산 장려금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음.
충 북	단양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11.10.13)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 3~6급 70만원 ↓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함.
	보은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에관한조례(08.12.12)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00만원
	증평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0.31)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00만원 * 다른 법규와 중복될 경우 그 차액만 지급
	청주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1.28)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충 단	충청남도여성장애인출산및영아양육지원조례(09.4.15)	저소득층(차상위 포함)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 1명마다 지급 출산지원금은 출산 전 1년 ↑ 거주, 양육지원금은 3세 이하 영아 양육 신고전 1년 ↑ 거주 * 지급방법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름.
	서산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양육비지원조례(2012.01.10)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 *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 지원가능. *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아산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11.12.15)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2급 100만원, 3~6급 7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함.

	조례명(제정일)	지원대상자	지원액
총 남	예산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10.09.30)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 * 위 지원을 받았더라도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 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추가지원 가능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6.12.26)(2011.02.11 개정.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 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00만원에서 1~2급 150만원, 3~4급 120만원, 5~6급 100만원 변경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 가지원가능
전 북	군산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1.17)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 '모'가 장애인일 때 1~2급 150만원 ↓, 3~4급 100만원 ↓, 5~6급 70만원 ↓ - '부'가 장애인일 때 1~2급 100만원 ↓, 3~4급 70만원 ↓ *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는 둘 중 지원액 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김제시장래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8.5)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 '모'가 장애인일 때 1~2급 150만원 ↓, 3~4급 100만원 ↓, 5~6급 70만원 ↓ - '부'가 장애인일 때 1~2급 100만원 ↓, 3~4급 70만원 ↓ * 신생아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면 둘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 지급 * 다른 법규로 출산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무주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11.05.02)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3급 100만원, 4~6급 70만원 * 쌍생아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무주군자녀출산장려금및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와 무관 별도지급.
	완주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7.29)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3급 100만원, 4~6급 70만원
	익산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12.01.12)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 쌍생아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 산해 지급. *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
	임실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1.4)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00만원
전 남	전주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6.13)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그 차 액 지급
	순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9.28)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 * 「순천시3자녀이상자녀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로 추가지원 가능
	목포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6.1)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 * 「목포시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추가지원 가능

〈부록. 2〉 전국 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 제정 현황(2012. 04. 01 기준 총 57개)

	조례명(제정일)	지원대상자	지원액
전남	여수시장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11.08.09)	장애인가정 (출산전 1년 ↑ 거주)	- '모'가 장애인일 때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일 때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 부모 모두장애안인경우지원대상액이많은금액으로 지급. *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가능.
	영광군여성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11.10.14)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3급 100만원, 4~6급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 하여 지급함. * 「영광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가능.
경북	구미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6.9)	여성장애인 (출산전 6개월 ↑ 거주)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영주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11.19)	여성장애인 (관내 주민등록된 자)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 「영주시출산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가능.
경남	창원시장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10.11.17)	장애인가정 (출산 전 6개월 ↑ 거주)	1~3급 100만원 *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고성군여성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에관한조례(2011.05.24)	여성장애인 (출산전 1년 ↑ 거주)	1~2급 100만원, 3~6급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 하여 지급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함.



◀ 성남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토론회(05.25)에서 발제중인 필자

〈표.3〉 장애가정(여성)출산 시책 추진 현황

(2011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 원)

계 (4)	광역시도	사업명	2011년예산				조례제정	작년대비 변동 (시도비/시군구비)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70,000		70,000		미제정	작년대비 10,000 감소
	강원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10,000		10,000		미제정	2011년 신설
	경상남도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25,000		25,000		미제정	2011년 신설
	제주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24,000		24,000		미제정	2011년 신설

계 (38)	기초 지자체	사업명	2011년예산				조례제정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 (1)	동작구	저소득장애인가정출산지원비	4,000			4,000	미제정	2011년 신설
경기 (1)	평택시	모자보건 지원 (장애가정 출산장려금)	10,000			10,000	미제정	2011년 신설
경남 (15)	거제시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3,000		1,500	1,500	미제정	
	거창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1,000		500	500	미제정	2011년 신설
	김해시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5,000		2,500	2,500	미제정	2011년 신설
	남해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1,000		500	500	미제정	2011년 신설
	밀양시	중증장애인출산도우미	3,000		1,500	1,500	미제정	2011년 신설
	사천시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3,000		1,500	1,500	미제정	2011년 신설
	산청군	장애인출산도우미지원	1,000		500	500	미제정	
	양산시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3,000		1,500	1,500	미제정	
	의령군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1,600		800	800	미제정	2011년 신설
	창령군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1명	1,000		500	500	미제정	
	통영시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4,000		2,000	2,000	미제정	증액(1000/1000)
	하동군	장애여성출산도우미제운영	1,000		500	500	미제정	감액(-/6000)
	함안군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1,000		500	500	미제정	2011년 신설
	함양군	중증여성장애인출산도우미지원	1,000		500	500	미제정	2011년 신설
	합천군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1,000		500	500	미제정	2011년 신설
충남 (2)	공주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원	2,000		600	1,4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논산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2,000		600	1,4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당진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3,000		900	2,1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보령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원	2,000		600	1,4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부여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2,000		600	1,4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표.3〉 장애가정(여성)출산 시책 추진 현황

(2011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 원)

계 (34)	기초 지자체	사업명	2011년예산				조례제정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충남 (2)	아산시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지원	4,000		1,200	2,800	제정	2011.12.15 제정
	연기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1,000		300	7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예산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	4,800			4,800	미제정	증액(600/1400)
	청양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1,000		300	7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태안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2,000		600	1,400	미제정	2011년 시책 폐지
강원 (18)	강릉시	장애인여성출산비지원	4,000		800	3,200	미제정	구성비 변동 (1000/4000)
	고성군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동해시	장애여성출산비지원	4,000		800	3,200	미제정	증액(900/2100)
	삼척시	장애여성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속초시	장애여성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감액(400/2400)
	양구군	장애여성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양양군	장애여성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영월군	여성장애인출산비	2,000		400	1,600	미제정	
	원주시	장애여성출산비지원	6,000		1,200	4,800	미제정	증액(1000/4000)
	인제군	장애여성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정선군	장애여성출산비	2,000		400	1,600	미제정	
	철원군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춘천시	장애여성출산비지원	6,000		1,200	4,800	미제정	
	태백시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4,000		800	3,200	미제정	
	평창군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홍천군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화천군	장애여성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제정	2011.04.29 제정
	횡성군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2,000		400	1,600	미제정	감액(400/2400)
전북 (1)	정읍시	장애인가정출산장려금지원	20,000			20,000	미제정	2011년 신설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판정 기준 개정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판정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심장장애인들의 고통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심장장애 판정기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취합해 점수로 판정하고 있다. 7가지 항목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 증상중등도(5점)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검사소견(10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입원병력(10점) ▲입원횟수(5점) ▲치료병력(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입원병력 점수가 5점으로 완화되고, 횡수 항목 점수 또한 3점으로 낮아졌다. 반면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심장기능검사) 항목은 8점으로 높였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의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간의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을 높이고자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했다.

지체절단 외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에이블뉴스」 기사 인용)

19대 총선, 장애인 국회의원 4명 선출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장애인 국회의원이 4명(비례: 김정록, 최동익/지역구: 심재철, 이상민) 선출되었다. 이는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역대 최다인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올해 19대 총선에 출마한 장애인 후보는 총 8명으로 비례를 받은 후보는 총 4명이다. 이중 새누리당 비례 2번을 받은 김정록 후보는 소속 정당이 정당 득표율 42.8%로 25석을 확보하면서 당선 기쁨을 맛봤다. 민주통합당 비례 2번을 받은 최동익 후보 역시 소속 정당이 정당 득표율 36.4%로 21석을 확보하면서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지역구로 출마한 장애인 후보 역시 총 4명으로 먼저 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새누리당) 후보가 51.7%(4만2,405표)의 득표율로 4선에 당선되었다. 대전 유성구 이상민(민주통합당) 후보도 52.5%(6만5,900표)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발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8일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26개 신규사업 포함)으로 구성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계획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계획수립과 실행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장애인 거주시설 1실 5명 수준으로 개선 △서울특별시 신규 공무원 인원 10% 장애인 채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하고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100만 원 지원 △2014년까지 저상버스 3,113대, 장애인콜택시 600대로 늘려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지원, 대학로 등 4개소 장애인 문화공연 공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과 관련해 “과거 장애인을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생계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펼쳐나가겠다”면서 “서울을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인 희망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비마이너’ 기사 인용)

부산광역시, 24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의 신체적 떨림 등의 현상과 치료과정에서 행동예측의 어려움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가 4월 24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부산·울산·경남 거주 장애인들의 치과진료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치 공모에서 부산대학교병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센터에는 전신마취기, 진정마취기, 환자감시장치 등이 구비된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대, 전신 CT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구강진료 및 전신마취가 가능한 수술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 의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방 거점 전문병원으로서 부산대학교병원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 하게 된다. 또한 부산광역시도 센터 운영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료비는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은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하고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에이블뉴스」 기사 인용)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소득격차 여전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향상됐으나,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히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2.9점에서 3.1점으로 3년간 다소 향상됐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히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98만 2000원으로 지난 2008년 181만 9000원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1%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8년 337만1000원에서 2011년 371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61만8000원으로 지난 2008년 155만5000원에 비해 4.1% 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이 12.6% 포인트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추기비용은 지난 2008년 15만9000원에서 2011년 16만1000원으로 다소 늘었고, 장애인 차량소유 비율도 52.7%로 2008년 49.3%에 비해 늘었다. 전국의 장애인 수는 268만 명으로 추정되며, 인구 만 명 중 장애인은 561명으로 장애출연율이 5.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질병·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90.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 조기발견을 비롯해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 및 사고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 수는 252만 명으로 98.8%의 등록률을 나타냈으며, 2005년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장애인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38.8%로 2008년 36.1%에 비해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장애인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이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20%), 장애 이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 고등교육지원 강화(15.8%)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16.1%),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비용지원(9.4%), 가사도우미(9.4)를 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4차 계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또한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기사인용)

보금자리주택, 장애인 접근권 개선

앞으로 LH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들이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주거동과 분리설치 되어왔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의무 주차대수가 분양주택보다 적어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소규모로 지어지면서 주동과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천 등의 경우에 장애인, 노약자 등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지상으로의 이동수단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불편을 겪어온 것.

이에 개정된 지침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국토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분양 및 임대 보급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2년간 총 9346건의 개선사업을 완료해주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편의시설을 11종(마루곰플 경사로,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조정,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경보기, 야간 센서 등, 음성유도

신호기)에서 좌변기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기가 추가된 13종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한 바 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108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기사인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 △제공기관의 장애인 이용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 규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 변경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 강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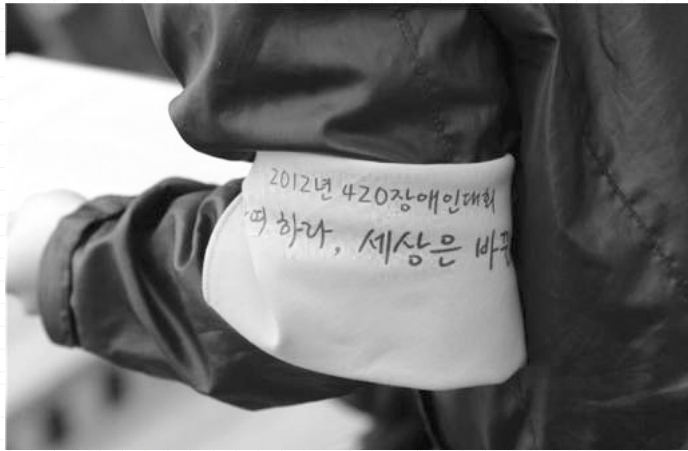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성별, 나이,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했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소지자로 규정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로 규정했다.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이 중 교사 2명 중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배치는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3월부터 만 4세, 2018년 3월부터 만 3세 이상 등 차례대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전송을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비마이너」 기사 인용)



참여하라, 세상은 바뀔 것이다.
4월 19일 장애인의 날 대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꼭 약속해
4월 19일 장애인의 날 대회



열심히 공부합니다.
4월 17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단원교육

김치~~

4월 17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단원교육



2012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 단원 교육
 ■ 일시 : 2012년 4월 17일 09:30~18:30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주최 : 한국장애인개발원
 ■ 후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우리들의 발자취

함께 하는 2012,
함께 가는 인권포럼
제4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국활동가 대회



**201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발표 및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2월 29일(수) 오후 1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 ●주최 : 한국장애인개발원 K-DI



따로, 또 같이 4월 5~6일 워크숍

2012년 장애인예산분석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2월 29일

2012년 4·20 거리 풍경

글 현근식 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어김없이 4월이 찾아왔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T.S. 엘리엇은 말했다. 장애인들에게 4월은 어떤 달일까? 자문해 본다. 그렇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 젓는다. 자문할 필요도 없이 장애인들에게는 모든 달이 잔인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 20일이 찾아왔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제외한 주위의 사람들은 장애인의 날 축제니, 장애체험 행사니, 장애인상 시상이니 하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정작 장애인당사자는 이날을 결코 기념하고 싶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의 날 반복되는 동정적인 각종 행사들과 온정적인 각종 언론 보도들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언론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날을

빌미로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신문과 방송을 온통 뒤덮는다. 어찌 그리 이날을 전 후로 자원봉사를 하려는 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이름 높은 기관장들은 하루 또는 한 시간 정도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으로 변신하고,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역할을 바꾸는 장면을 연출하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이 날, 왜 장애인들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신문을 한쪽 면을 장식해야 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따뜻하고 훈훈한 장면 뒤에 장애인에게 주어진 경제적 불평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물리적 장벽으로 가로 막혀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그날만은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럴까?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은 먼저 기원을 따져본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슬픈 날이었다. 72년 정부가 만든 이날 기념일 명칭은 재활의 날이었고 이는 장애인이나 환자들의 정상적인 기능 재활을 독려하여 국가나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길 장려하는 날이었다. 의사들이 만들어놓은 재활논리에 빠져 굳은 다리를 움직이려고 몸부림 치고 정상으로 회복하고 싶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한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이날은 패배의 날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81년을 UN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한국 정부도 그해 4월 20일을 '제 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해버린 것이다. 하루아침에 장애인들이 이날을 즐거워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과는 달리 매해 12월 3일을 UN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로 제정하였다. 기념일의 제정 이유나 목적도 당연히 다르지만 날짜마저 달라 과연 정부가 장애인의 삶 향상을 위해 만든 건지 의문시 된다. 그냥 장애인의 날, 이름만 같을 뿐이다.

이는 그날을 투쟁의 날로 선포한 장애인 단체의 성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날”이라고 4월 20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4월 20일 전후에도 종로 보신각 앞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탄식하며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집회를 개최했다. 일부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거리행진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풍자하는 콩트와 노래를 공연하며 울분을 삭히기도 했다. 해마다 이런 풍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여전히 그런 불평등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전 장연이라는 연대체 주도의 20개 단체)의 장애인들은 격한 목소리로 울분의 시위를 벌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외치던 장애인 당사자들이었다. 또한 장애인권리찾기운동본부(장총, 장총련, 한자연 등 6개 단체 연대) 420 장애인 대회를 갖고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한 자립생활 실현을 촉구했다. 물론 이 두 곳에 모인 장애인들은 합해봤자 천명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대다수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며 정부와 지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자이며 소비자(Consumer)인 것이다. 즉 일종의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그 정책을 이용해야 할 당사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쯤 되면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주체들은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는 엉뚱한 미담이나 시혜적인 행사를 발굴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의 주장을 차분히 들어주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통합과 화합의 노력이 있어야만 축제는 진정으로 즐겁고 신나지 않겠는가? 2012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해되지 않는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당사자로서의 작은 변화를 그려본다.



◀▲ 2012년 4월 20일 거리풍경

폭력에 익숙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 〈폭력의 기억〉 —

글 이병원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이따금씩 나는 인간의 포악함에 대해 고민한다. 그것은 문명화된 인간이 아직까지 육체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거나, 문명화가 불가능한 동물들이 가진 동족간의 폭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폭력은 대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힘의 우위를 겨룰 때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육체적 싸움, 그것은 동등한 권력 안에서 발생하기에 숭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인간사 대부분의 폭력은 권력 우열로 인한 것이다. 권력으로 인한 폭력은 먹이사슬 속 포식자의 그것에 비해 정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시 고민해 보자. 과연 인간

은 문명화된 것일까? 개인 대 개인의 폭력관계가 힘의 우열에 따른 것이라면 민족 대 민족, 종교 대 종교, 국가 대 국가 간의 폭력 및 전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기에 이 고민은 끝없이 확장된다.

폭력은 권력 우열로 발생한다는 명제에 반발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부모가 제 자식을 체벌하는 것이 훈육의 방편이라면 훈육이 필요한 부모는 제 자식에게 맞아 마땅한가?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매라는 폭력의 수단을 사랑의 매로 결합시키는 형용모순을 우리나라만큼이나 일반화시키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일반적 상식으로 폭력은 교정수단으로 인식되곤 한다. 즉, 한 아이의 과오를 교정하기 위해 체벌이라는 자극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벌이 과연 아이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다면 아이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수단이 체벌밖에 없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 너무나 쉽게 체벌이라는 편의주의적 수단에 의탁했는지도 모른다.

앨리스 밀러의 폭력의 기억은 이러한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다. 어렸을 적 부모의 학대에 시달린 아이들이 성장하고서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과 무력감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심하게는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폴란드인에 의해 쓰여 졌지만 21세기의 한국에서 아직도 유효하다.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우리 사회가 차별이라는 통제수단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보여준다. 차별금지=교권붕괴 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앞세운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용납되고 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권력관계, 권력의 필요에 의한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폭력이라는 신체적 아픔을 동반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란 실은 선생과 학생,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고용자와 피고용자 등의 사회적 계약관계이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를 테면 어느 재벌2세가 노동자를 엮드려뺨치게 한 후 소위 ‘빠따’를 때리는 관계가 이렇다. 보다 순화시킨 예를 들자면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아이의 손바닥을 때리는 순간의 선생과 학생,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엘리스 밀러는 이러한 권력에의 도전, 극복을 주장한다.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종교적 권위에의 도전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식의 종교적 믿음에 의해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통제할 때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녀는 몸속에 저장된 감정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막혀 있으면 성인이 되어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가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할 때에는 그 아이가 커서 제 아이를 갖게 됐을 때에도 똑같은 육아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녀는 아돌프 히틀러가 벌인 만행도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당한 것을 학습하여 전 세계에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악행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했다는 말이다. 책에 의하면 이는 스탈린, 무솔리니, 사담 후세인 등 많은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이 어린 시절에 받은 고통이 훗날 증오로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장애인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력적 인권침해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시설 장애인들은 통제된 시설의 생활양태 속에서 언제나 시혜자의 입장인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강요받아왔다. 이러한 관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상·하적 관계로 예측시킨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자율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타율적 권력관계에 매몰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발적 의지는 묻히며 자립

보다 통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설 장애인들이 어렵게 자립생활 의지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생활에서 체득한 권력관계를 자립생활과정에서 드러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완전한 자립이란 물리적 형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동안 폭력이 삶에 끼친 영향들을 가벼이 생각했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매뉴얼이 될 만하다. 또한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앨리스 밀러 ALICE MILLER

1923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1946년 스위스로 이주했다. 바젤 대학에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을 공부하고, 1953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취리히에서 정신과 의사 수련을 받은 뒤 2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 생활을 했고, 1979년 이후로는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앨리스 밀러는 모든 저서들을 통해 한결같이 어린 시절에 받은 부정적인 교육이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을 중시하면서, 우울증을 비롯한 다른 정신 질환의 원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체벌, 무시, 냉대, 굴욕, 학대와 같은 경험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이론적으로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79년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 DAS DRAMA DES BEGABTEN KINDES》를 출간한 이래 《사랑의 매는 없다 EVAS ERWACHEN》 등을 포함한 1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고, 1986년에는 아동 보호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야누슈 코르차크 (JANUSZ KORCZAK) 상을 수상했다.

뒤로 가는 달리기, 그래도 괜찮아

— 영화 <달팽이의 별> —

글 임예직¹⁾ 서울여자대학교 4학년



당신은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시청각 장애는 시각과 청각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흔히 감각의 상실 상태라고 표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많은 장애를 접해 봤지만, 시청각 장애를 가진 분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 '달팽이의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접하기 쉽지 않은 시청각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달팽이의 별'은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찬씨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순호씨의 삶을 잔잔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시청각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잘 드러낸 영화며,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점화라고 하는, 촉각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점화를 매개체로 하여, 두 사람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달팽이의 별'이 시청각장애인의 삶을 그린 것이니만큼,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배리어프리 영화로도 제작되어 여러 곳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시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측은하게 느껴지나요? 그러나, 그들이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감각 덕분에 오히려 촉각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감각에 대해 감사할 줄 알며, 그 느낌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달팽이'라는 동물에 비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1) 영화평을 쓴 임예직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청각장애인입니다.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비교적 짧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피소드와 영찬씨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몇 가지 꼽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뒤로 가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어떻게 뒤로 뛰는가 싶기도 했지만, 실제로 열심히 뒤로 뛰는 영찬씨를 보면서, 달리기는 앞으로만 간다는 고정관점이 깨졌습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편견을 깨기 위해 영화 서두에서 이 장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형광등 갈아 끼우기'입니다. 두 사람에게 형광등을 가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척추장애로 아이 정도의 키를 가진 순호씨가 침대 위로 올라가 형광등을 갈아 끼우기에는 형광등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에 닿을 수 있는 영찬 씨는 보이지 않아 형광등을 정확하게 끼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로가 합심해서 해내고 맙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채움'의 존재가 되어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찬씨가 나무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찬씨는 나무껍질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나무의 향기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또, 머리를 나무에 기대고 나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상상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을 영찬씨는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느껴봅니다. 감각 하나하나를 모두 일깨워 소중하게 나무를 느낍니다. 이를 통해 감각이 없다고 불편할 것 같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와
대화하는
영찬씨

지금까지 설명한 장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영찬씨와 순호씨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있는 감각과 능력을 모두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삶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너무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영화에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니다.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극 중 인상 깊었던 영찬씨의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은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 놀랄 것입니다. 조금만 늦게 걸어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을 화사하게 만드는 벚꽃, 목련이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귀를 닫아보세요. 바람의 향기가 색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화정보 달팽이의 별, 다큐멘터리, 한국, 2012

감독 이승준

출연 조영찬, 김순호



인터넷에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날개를 달자 !!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는 정보(웹)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주된 장애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표준 및 접근성 진단 · 컨설팅 전문그룹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컨설팅분야 최초 사회적기업

● ● ● 웹 표준 ·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용성 진단평가로 장애인 당사자 사용편의성 점검

● ● ● 웹 모니터링 서비스(Web Monitoring Service)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후 웹 접근성 품질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 ● 웹 접근성(WA) 인증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 사용성 진단 평가 실시



T.(02)2678-0078

E-mail. webwatch@hanmail.net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지원센터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센터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 이권희)	T. 02.2252.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4층
부산 (대표: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대전 (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번지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01-3 신라프라자 105호
경기 (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도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 박광순)	T. 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전북 (대표: 김미아)	T. 063.229.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경남 (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제주 (대표: 고현수)	T. 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